

한국현대사연구원 규정

시행: 2022. 12. 01.

전 문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인다. 광복 이후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례없는 압축 성장, 그리고 새로 발굴된 소련과 중국 측 사료는 기왕의 한국현대사 인식 틀을 허문다. 종래 식민주의사관의 극복을 최대과제로 삼은 한국사학계는 민족을 주어로 한국현대사를 조명해 왔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 동서 양진영이 대립한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기 지속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은 열강의 이해가 엇갈리는 세력 각축장이라는 점이다. 19세기에 일어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조선왕조는 멸망했으며, 20세기에 터진 태평양 전쟁과 6·25전쟁은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을 초래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현대사의 전체상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민족 자주성의 신화와 한반도의 경계를 넘는 국제사적 조망이 필요하다.

역사는 내일이 태동하는 오늘의 뿌리이다. 특히 당대사 연구는 미래의 진로를 비추는 등대다. 19세기 아래 세사는 한반도의 평화가 깨졌을 때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갈등과 대립이 촉발되었음을 응변한다. 냉전 붕괴 이후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유럽은 지난 세기 역사의 상흔을 치유해 지역공동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역사기억도 충돌 일로를 걷고 있다. 남북의 대립과 동아시아 지역 내 민족주의의 부활은 인류사회의 염원인 평화와 공영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종·성차(젠더)를 넘어 생각과 지향과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인류사회의 구현을 위해 지난 역사가 남긴 남북 간, 동아시아지역 국가 간 불화 해소는 동아시아를 넘어 인류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풀어야만 할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현대사연구원은 국가와 민족과 이념의 울타리, 그리고 세분화·전문화된 학문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 인류사, 문명사의 맥락 하에서 인류학, 철학, 정치학, 종교학, 미래학을 포괄하는 “범학제적 (trans-disciplinary)” 조망을 통한 총체사적·미래지향적 한국현대사 연구·교육·실천 사업을 수행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기관은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며, 기관의 영문 명칭은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History"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연구원은 인간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영의 인류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경희학원의 창학 이념에 따라 미래지향적 한국현대사 연구, 교육, 실천 사업을 전개하여 인문 사회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 4 조(사업) 본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미래지향적 한국현대사 연구, 교육, 실천 사업
- 출판
- 연구 결과 발표 및 학술회의
-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제간 융합과 한국 사학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제3장 유관기관 및 조직

제 5 조(유관기관 등) 본 연구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 미래문명원
- 국제교류처

3. 평화복지대학원, 공공대학원

4. 경희사이버대학교

5.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제 6 조(조직) 본 연구원은 원장, 명예원장, 고문,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감사, 프로그램운영실, 대외협력실,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원장)

-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원장은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명예원장)

- ① 명예원장은 본 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본 연구원의 업무를 자문한다.
- ② 명예원장은 본 연구원 유관기관의 대표의 합의로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③ 명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고문)

-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자문위원)

-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 11 조(운영위원회)

- ① 본 연구원에는 원장, 프로그램운영실장, 대외협력실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 4조 제 1호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2. 제 4조 제 1호와 관련된 예산 및 결산
 - 3. 본 연구원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③ 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제 12 조(감사)

- ① 본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3 조(프로그램운영실)

- ① 본 연구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연구 및 사업 조정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실을 둔다.
- ② 프로그램운영실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대외협력실)

- ① 본 연구원 대외 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연구 및 사업 조정을 위하여 대외협력실을 둔다.
- ② 대외협력실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사무국)

- ① 본 연구원의 제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본교 직원 중에서 1인의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16 조(연구교수 등)

- ① 본 연구원에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 겸직, 겸임 교수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 겸직, 겸임 교수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연구원)

- ① 연구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 18 조(재정) 본 연구원의 제반 활동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본교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수탁연구 과제의 연구비 또는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 20 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